

화성시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 6. 29. 화성시장
- 나. 회 부 일 자 : 2023. 6. 30.
- 다. 상 정 일 자 : 제22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023. 7. 13. 원안가결)

2. 제안요지설명(이일로 버스혁신과장)

가. 제안이유

-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한 정책결정 자문기구(동탄트램 전문가 자문단)의 분야별 전문위원 확대 및 자문기능 내실화 등 효율적인 정책 결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자문기구의 구성인원을 “15명”에서 “40명”으로 확대(안 제20조)
- 위원 수당 및 실비 지급 규정 삭제(안 제25조 및 제3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박만규 전문위원)

- 가. 본 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한 동탄트램 전문가 자문단의 분야별 전문위원을 확대하여 자문 기능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 나. 주요 내용으로는 자문기구의 구성인원을 15명에서 40명으로 확대는 것과,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중복되어 불필요한 ‘위원 수당 및 실비 지급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 다. 조례 개정을 통해 효율적인 정책 결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 6. 29.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6. 30.

다. 상 정 일 자 : 제22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023. 7. 13. 원안가결)

2. 제안요지설명(서봉기 도시디자인과장)

가. 제안이유

- 「화성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의 상위 법률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9244호, 2023. 3. 21. 공포)됨에 따른 불일치 조문을 현행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법 제6조제1항”을 “법 제6조제2항”으로 변경하여 해당 법률 조항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박만규 전문위원)

가.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불일치 조문을 현행화하려는 것으로,

나. 주요 내용으로는 제7조제1항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화성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라는 조문에서 ‘법 제6조제1항’을 ‘법 제6조제2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다.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 6. 29. 정홍범 의원 외 10인

나. 회 부 일 자 : 2023. 6. 30.

다. 상 정 일 자 : 제22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023. 7. 13. 원안가결)

2. 제안요지설명(정홍범 위원)

가. 제안이유

- 화성시의 지역특색과 도시계획의 연속성 확보, 분야별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등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심의 운영을 위해 임기만료나 질병·장기 해외출장 등의 사유로 해촉되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에 대해 재위촉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제62제6항제2호·제4호·제5호·제6호(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에 따라 해촉된 경우를 제외하고 임기 만료나 질병·장기 해외출장 등으로 해촉된 경우 2년이 경과하면 재위촉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62조제5항 및 제7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박만규 전문위원)

가.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재위촉 가능 대상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나. 주요 내용으로는 제62조제5항 조문에서 ‘임기만료’와 ‘해촉’을 명확히 구분하여 용어가 혼동되지 않도록 하고, ‘재위촉할 수 없다’는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중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항과,

다. 해촉 후에는 ‘재위촉을 할 수 없던 것’에서 재위촉 제한 사유를 제62조제6항 ‘제2호, 제4호, 제5호, 제6호’로 명시하여,

라. 제1호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3호 질병·해외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 두가지 사유로 해촉된 경우와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마. 조례 제정을 통해 위원회 위원의 인력풀이 다양화되고, 경험 누적으로 인한 전문성과 강화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판단되나, 위원회 위원의 재위촉이 가능해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바. 제62조 제6항 각 호의 해촉사유 전체를 재위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부서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최대 기간 6년으로 제한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보행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 6. 29. 김상균 의원 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23. 6. 30.

다. 상 정 일 자 : 제22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023. 7. 13. 원안가결)

2. 제안요지설명(김상균 위원)

가. 제안이유

- 어린이 통학로 등의 정의를 신설하고, 어린이 등 보호구역 내 공사로 인한 보행 및 교통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발생 시 공사시행 주체에게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요청하고, 통학시간 외 공사를 시행할 것을 행정지도(권고 등)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통학로” 및 “통학시간” 을 정의함(안 제2조제10호 및 제11호 신설).
- 어린이 등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박만규 전문위원)

가. 본 개정조례안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내 공사로 인한 보행 및 교통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나. 주요 내용으로는 ‘통학로’ 및 ‘통학시간’ 의 정의를 신설하고,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공사시행주체에게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 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다. 통학로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공사를 실시하도록 행정지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있습니다.

라. 조례 개정을 통해 어린이 등 보호구역 내 공사로 인한 보행 및 교통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 6. 29. 김상균 의원 외 6인

나. 회 부 일 자 : 2023. 6. 30.

다. 상 정 일 자 : 제22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023. 7. 13. 원안가결)

2. 제안요지설명(김상균 위원)

가. 제안이유

-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과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경우, 시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부지확보나 예산상 문제 등을 이유로 시에서 주차장을 제공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주민 편의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시가 설치하지 않은 주차장을 임차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해 주차장 임차 등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박만규 전문위원)

가. 본 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주차장을 제공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시가 설치하지 않은 주차장을 임차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나. 주요 내용으로는 화성시가 설치하지 않은 주차장을 임차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하고,

다. 주차장의 임차계약 방법, 금액 등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라. 조례 개정을 통해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 6. 29. 화성시장
- 나. 회 부 일 자 : 2023. 6. 30.
- 다. 상 정 일 자 : 제22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023. 7. 13. **수정가결**)

2. 제안요지설명(인미경 주차관리팀장)

가. 제안이유

- 거주자 우선주차장의 주차장 공유 플랫폼을 도입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캠핑용자동차 공영주차장 요금 기준 마련, 공장 및 창고 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표 및 감면기준 개정을 통해 주차난 해소 및 시민 주차 편익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거주자 우선주차장에 주차장 공유 플랫폼을 도입하기 위한 근거 조항 신설(안 제5조의3)
 - 주차장 공유 플랫폼 정의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혜택 지급 내용 반영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개정(별표 2)
 - 주차장 공유 플랫폼 도입을 위한 거주자 우선주차장 주차 요금표 개정
 - 캠핑용자동차 전용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표 신설
 - 전일주차권에 대한 적용 기준 명확화
 - 유료 공영주차장 전일주차권 요금 10,000원에서 6,000원~10,000원으로 수정
 - 유료 공영주차장 정기권 요금 하한선 60,000원에서 30,000원으로 하향 조정
 - 거주자 우선주차장의 공유주차구획에 대한 주차 요금 기준 신설

○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및 설치기준 개정(별표 3)

-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에 대한 주차장 설치 기준 시설면적 350㎡당 1대에서 175㎡당 1대로 강화
- 창고시설에 대한 주차장 설치 기준 시설면적 400㎡당 1대에서 200㎡당 1대로 강화
-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에 관한 비고 사항 상위법 위임 근거 명확화.

○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대상과 기준 개정(별표 4)

-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개선과제에 따른 임산부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기준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박만규 전문위원)

가. 본 개정조례안은 거주자 우선주차장에 ‘주차장 공유 플랫폼 사업’을 도입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별표2]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표, [별표3]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 [별표4]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대상과 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나. 주요 내용으로는 거주자 우선주차장에 ‘주차장 공유 플랫폼’을 도입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주차장 공유 플랫폼’의 정의 및 혜택 지급을 위한 근거 마련하는 것과,

다. [별표2]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표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장’ 주차 요금표를 개정하고, ‘캠핑용자동차 공영주차장’ 요금표를 신설하며, 비고란에 ‘거주자 우선주차장’의 ‘공유주차구획’에 대한 주차 요금 기준을 신설하고, ‘전일주차권’에 대한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며, 공영주차장 이용률 제고와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전일주차권’과 ‘월정기권’ 요금의 하한선을 하향 조정하는 사항,

라. [별표3]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및 설치기준에서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 및 창고시설’에 대한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비고란에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에 관한 사항과 상위법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는 사항,

마. [별표4]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대상에 ‘임산부’에 대한 요금 감면 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바. 위와 같이 조례 개정을 통해 주차난 해소와 시민 주차 편익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임산부’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은 출산장려와 사회적 배려를 위해 필요한 부분으로,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 이 외에는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붙임: 수정대비표)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